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은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418
----------	------

발의연월일 : 2017. 8. 7.

발의자 : 유은혜 · 김병욱 · 김민기
조승래 · 신경민 · 정춘숙
정성호 · 민홍철 · 윤소하
원혜영 · 손혜원 · 소병훈
김정우 · 송옥주 · 박정
의원(15인)

제안이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소득연계대출로서 그 상환방식이 한국
장학재단으로 수시로 납부하는 자발적 상환과 소득수준에 따라 국세
청이 부과하여 상환하는 의무적 상환으로 이원화 되어 있음.

의무적 상환의 경우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금년도에 의무상환액을
부과하므로 채무자의 상환환경의 변화(경제적 곤란)로 인한 미납 및
체납이 발생하는 등 현행 제도를 운영하는데 채무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따라서 채무자가 전년도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을 금년도 의무
상환액에서 차감하여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경감해줄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상환유예대상을 확대하여 실직·폐업 또는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없는 채무자가 겪는 어려움을 감안, 대학생의 경우처럼 상환유예를

적용하여 상환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전년도에 소득이 발생하여 의무상환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의무상환 시기에 폐업, 실직 및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 의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음(안 제18조제7항 개정).
- 나. 의무상환액 산정 시 전년도 자발적 상환액을 차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8항 신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학생인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으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가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대학생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을 신고한 자
3.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근무한 후 실직한 자나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후 퇴직한 자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육아휴직을 신청한 자

제18조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이 있는 채무자의 의무상환액은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의무상환액에서 채무자가 해당 소득 귀속연도에 제1항에 따라 상환한 금액(제39조제6항에 따라 반환한 금액은 제외한다)을 차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감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에 대해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의무상환액을 한도로 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무상환액 산정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귀속 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 산정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8조(대출원리금의 상환원칙)</p> <p>① ~ ⑥ (생 략)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u>대학생</u>인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으로 인하여 제2항에 따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받아 그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p> <p>1.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 <신 설></p>	<p>제18조(대출원리금의 상환원칙)</p> <p>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u>다음</u> <u>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가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으로-----</u> ----- ----- -----. <u>1. 대학생</u> <u>2.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을 신고한 자</u> <u>3.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근무한 후 실직한 자나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후 퇴직한 자</u></p>

<신 설>

<신 설>

⑧ (생 략)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

9조, 「국가공무원법」 제71

조제2항제4호 또는 「지방공

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육아휴직을 신청한 자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이 있는 채무

자의 의무상환액은 제2항에 따

라 계산한 의무상환액에서 채

무자가 해당 소득 귀속연도에

제1항에 따라 상환한 금액(제3

9조제6항에 따라 반환한 금액

은 제외한다)을 차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감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에 대해 제2

항에 따라 계산한 의무상환액

을 한도로 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

⑨ (현행 제8항과 같음)